

KLRI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2023년 제8호

Global Legal Issue

UNCITRAL의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 초안”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LRI
Global Legal Issue

UNCITRAL의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 초안”
논의 동향 및 시사점



CONTENTS

I. 검토 배경	09
II. 자동계약의 개념 및 기존 UNCITRAL 법률 등의 관련 규정	11
1. 자동계약의 개념	11
2. 기존 UNCITRAL 법률 등의 관련 규정	13
III. UNCITRAL의 “자동 계약에 관한 원칙 수정안”의 내용	19
1. 계약시의 자동화된 시스템의 사용	19
2. 법적 인정	23
3. 기술중립성	24
4. 귀속	24
5. 당사자의 의사, 지식 및 인식	27
6. 잘못된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효력	28
7. 관련 법률의 준수	30
IV. 향후 전망 및 시사점	32
1. 향후 전망	32
2. 시사점	33
참고문헌	37



요약

검토배경

-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의 Working Group IV는 전자상거래 분과(이하 '실무그룹'이라 함)로 전자상거래 관련 다양한 논점에 관한 검토를 이어 가고 있음
- 2023년 9월 현재 실무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에는 “데이터 계약”에 관한 논의와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는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ovisions on automated contracting)” 논의가 있음
- 스마트계약, 알고리즘 계약 등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포함한 자동계약은 새로운 계약 시대를 위한 길을 열었다는 평가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기존의 계약법상의 이론과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배경에 따르면 위원회와 실무그룹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계약 등 자동계약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할 것임

자동계약의 개념 및 사례

- 실무그룹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전에 논의되었던 전자계약과 다른 “자동계약(automated contracting)”에 관한 것으로 “알고리즘 계약”이라고도 하며, 전자계약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
- 즉, 실무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계약은 청약의 데이터 메시지와 그 수락 또는 계약 이행시 취해지는 조치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 메시지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운영을 의미하고 있으며, 실무그룹에서는 자동계약의 개념 설정에 있어 “계약 전 단계부터 계약 체결, 이행, 재협상 및 해지에 이르는 전체 계약 주기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실무그룹에서 제시된 자동계약의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 사물 인터넷의 일부로 연결된 장치를 포함한 스마트 장치를 통한 거래를 제시하고 있음

요약

- 이 장치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기업 간 거래(B2B)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장치의 사용은 기존 소비자 보호법의 범위 및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계약의 형성 및 이행과 관련된 근본적인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기 때문으로 보임
- 또한, 제63차 실무그룹 회의에서 고빈도 거래가 자동계약의 일반적인 사례로 확인되었는데, 고빈도 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자동매매를 의미하며 금융상품 관련 규제 시장과 비규제 시장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음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 제정 방향

- 위원회에서는 자동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무그룹을 통하여 기존 UNCITRAL의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ing) 관련 법률 등의 규정을 이하에서 설명하는 자동계약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판단됨
- 그 개정 대상 법률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a) 1996년 유엔 국제상거래법 모델법(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MLEC)
- (b) 2005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현 이용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ECC)
- (c) 2017 UNCITRAL 전자적 전송 가능 기록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MLETR)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 수정안”의 내용

- 실무그룹 제64차 세션에서 UNCITRAL 기존 규칙들 중 관련 조문을 추출하여 수정 작업을

요약

진행하였으며, 초안을 마련하여 사무국에 이 초안을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무국에서 이후에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실무그룹 제66차 세션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의 조문 차례는 아래와 같음

Principle 1 Use of automated systems in contracting	원칙 1 계약 시 자동화된 시스템 사용
Principle 2 Legal recognition	원칙 2 법적 인정
Principle 3 Technology neutrality	원칙 3 기술 중립성
Principle 4 Attribution	원칙 4 귀속
Principle 5 Intention, knowledge and awareness of the parties	원칙 5 당사자의 의사, 지식 및 인식
Principle 6 Legal consequences of erroneous data messages	원칙 6 잘못된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효력
Principle 7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원칙 7 관련 법률의 준수

시사점

-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은 MLEC 채택 이후 30년 동안의 무역 관행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이 채택될 경우 각 국가 차원의 후속 개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공지능 등 기술의 보편적 사용에 따라 국제적인 상거래분야 자동계약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UNCITRAL의 역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임
- 디지털 시대에서 이전보다 신속하고 단순화된 계약 방식은 교섭 과정에서 인적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줄이고 합의 과정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한 계약 등의

요약

방식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스마트계약이나 알고리즘 계약 등에 관한 적용까지 이어지고 있음

- 인공지능이나 분산원장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계약 등 계약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의 정교함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원격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결국 계약의 협상, 체결 및 이행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와 함께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교섭력의 확보 측면이나 의사표시의 귀속 가능성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자동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국제규범을 마련해 나간다는 것은 제도의 발전과 함께 법률을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계약 방식을 사용하는 자동계약 분야에 있어서 국가 간의 기술발전의 차이가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공통된 국제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면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보완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임

I 검토 배경

-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United Nation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의 Working Group IV는 전자상거래 분과(이하 ‘실무그룹’이라 함)로 전자상거래 관련 다양한 논점에 관한 검토를 이어 가고 있음
- 2023년 9월 현재 실무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에는 “데이터 계약”에 관한 논의와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는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ovisions on automated contracting)”¹⁾ 논의가 있음. 자동계약에 관한 논의의 경과를 보면, 제63차 실무그룹 회의(뉴욕, 2020년 4월 4일~8일)에서 자동계약에 관한 의제가 제안되었고²⁾ 이를 제55차 위원회 회의(뉴욕, 2022년 6월 27일~7월 15일)에서 검토하여, 위원회가 실무그룹에 “자동 계약(automated contracting)”에 관한 주제를 논의하도록 위임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³⁾
- 위원회에서는 자동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무그룹을 통하여 기존 UNCITRAL의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ing) 관련 법률 등의 규정을 이하에서 설명하는 자동계약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특징으로 판단됨

1) UNCITRAL 실무그룹의 자료에서의 표현은 “Draft provisions on automated contracting”으로 자동계약 원칙 초안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을 포함한 계약이나 알고리즘 계약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기계적인 반복적 자동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자동”이라는 표현은 기계 자체 내에 있는 일정한 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나 일, 행동 따위가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 지는 것을 의미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9E%90%EB%8F%99>, 2023. 9. 26. 최종방문) 있어 인공지능 등 기술이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다. 의역하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여기에서는 UNCITRAL 논의 동향에 관한 전달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자동계약”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일부 본문에서 인공지능 등을 사용한 자동계약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자동계약의 개념은 본문에서 추가로 설명하였다.

2) 실무그룹은 제63차 회의에서 신원 관리(IdM) 및 신탁 서비스의 사용 및 국경 간 인정에 관한 모델법 초안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심의하였으며, 계약에서 인공지능(AI) 및 자동화의 사용과 데이터 거래라는 두 가지 새로운 주제에 대한 향후 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인공지능 등을 사용한 자동계약에 대한 사항을 주로 검토한다. United Nations, UNCITRAL Working Group IV 63세션 요약보고서(A/CN.9/1093): “Summary of the Chairperson and the Rapporteur of the work of Working Group IV (Electronic Commerce) at its sixty-third session”, 2022. 5. 9., 2쪽,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V22/028/06/PDF/V2202806.pdf?OpenElement>, 2023. 9. 26. 최종방문).

3) United Nations, UNCITRAL Working Group IV 64세션 자료(A/CN.9/WG.IV/WP.176): “Provisions of UNCITRAL texts applicable to automated contracting Note by the Secretariat”, 2022. 9. 12., 2쪽,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V22/177/29/PDF/V2217729.pdf?OpenElement>, 2023. 9. 20. 최종방문).

- 이에 따라 실무그룹에서는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는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 초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제65차 실무그룹 회의에서 UNCITRAL 사무국의 원칙 개정안(1차 개정안)을 검토하였음. 이후 UNCITRAL 사무국에서는 실무그룹 제66차 회의(2023년 10월 16일~20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1차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 8월 자동계약에 관한 초안의 수정안이 제시된 상황임⁴⁾
- 계약은 소유권 보장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적 기둥이며, 자유 시장질서에서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을 유통하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중심적 역할하고 있음.⁵⁾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계약은 경제·기술발전에서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부각에 따른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 있으며,⁶⁾ 이러한 스마트계약은 새로운 계약 시대를 위한 길을 열었다는 평가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기존의 계약법상의 이론과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스마트계약, 블록체인 이용 계약, 알고리즘 계약 등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계약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한 계약관련 현행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위원회와 실무그룹을 통한 자동계약에 관한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실무그룹의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 초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4) United Nations, UNCITRAL Working Group IV 66세션 자료(A/CN.9/WG.IV/WP.182): “Draft provisions on automated contracting”, 2023. 8. 14., 2쪽.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LTD/V23/063/84/PDF/V2306384.pdf?OpenElement>, 2023. 9. 26. 최종방문).

5) 김종길, “스마트 계약 성립의 계약법적 정합성에 관한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4. 30., 233-234쪽.

6) 블록체인 기술은 계약 당사자나 중개인의 개입 없이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마트계약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하여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역시 스마트계약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II 자동계약의 개념 및 기존 UNCITRAL 법률 등의 관련 규정

1. (1) 자동계약의 개념상 범위

자동계약의 개념

- 전통적인 계약의 체결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증명하는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한 것으로 보았으나 전자적 수단이 발달하게 된 이후에 UNCITRAL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계약의 체결과 그 이후의 협상과 이행에서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을 “전자계약”이라 칭하며 전자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논의해왔음⁷⁾
- 그런데 실무그룹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전에 논의되었던 전자계약과 다른 “자동 계약”에 관한 것으로 “알고리즘 계약”이라고도 하며, 전자계약을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⁸⁾
- 즉, 실무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계약은 청약의 데이터 메시지와 그 수락 또는 계약 이행시 취해지는 조치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 메시지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운영을 의미함⁹⁾
- 따라서 실무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automated contracting”을 여기에서는 원문 번역에 가까운 “자동계약”으로 표시하였는데, 실무그룹 논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이 자동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¹⁰⁾ 단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계약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스마트 계약¹¹⁾이나 알고리즘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임

7) 전계 자료(각주 3), 2쪽.

8) 전계 자료(각주 3), 2쪽.

9) 전계 자료(각주 3), 2쪽.

10) 전계 자료(각주 3), 3쪽.

11) 분산원장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계 자료(각주 3), 3쪽.

- 그 밖에 실무그룹에서는 자동계약의 개념 설정에 있어 "계약 전 단계부터 계약 체결, 이행, 재협상 및 해지에 이르는 전체 계약 주기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2) 실무그룹에서 제시된 자동계약 사례

-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는 소비자의 거래에서 자동계약이 이미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플랫폼 경제에서 전문 트레이더와 소비자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역시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실무그룹에서 제시된 자동계약의 대표적인 사용 사례로 사물 인터넷의 일부로 연결된 장치를 포함한 스마트 장치를 통한 거래를 제시하고 있음. 이 장치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기업 간 거래(B2B)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장치의 사용은 기존 소비자 보호법의 범위 및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계약의 형성 및 이행과 관련된 근본적인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기 때문으로 보임. 이러한 배경에서 실무그룹은 뒤에서 제시하는 "2005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현 이용에 관한 유엔 협약"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계약 당사자를 소비자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계약의 적용사례와 상업적인 거래 전반에 적용되도록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음¹²⁾
- 또한, 제63차 실무그룹 회의에서 고빈도 거래가 자동계약의 일반적인 사례로 확인되었는데, 고빈도 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자동매매¹³⁾를 의미하며 금융상품 관련 규제 시장과 비규제 시장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함.¹⁴⁾ 또한 각 국가에서는 고빈도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나 규칙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빈도 거래의 계약법적 측면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음

12) 전제 자료(각주 3), 27쪽.

13)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주식거래, 가상자산 거래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14) 알고리즘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해당된다.

- 한편,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스크래핑’을 다루는 사건에서 인터넷 봇(인터넷 봇을 사용하여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웹사이트와 상호 작용하여 형성된 계약이 제시되기도 함¹⁵⁾
- 그 밖에도 자연인이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프트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자동화된 협상 도구(웹사이트를 통해 액세스 할 수 있는 챗봇)와 상호 작용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제시됨¹⁶⁾

2. (1) 개정 대상 법률 등

기존 UNCITRAL 법률 등의 관련 규정

- 자동계약의 내용을 기존 UNCITRAL 전자계약 관련 대상 법률 등에 반영하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개정 대상 법률 등과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무그룹에서는 아래의 법률 등을 그 대상으로 제시하였음

- (a) 1996년 유엔 국제상거래법 모델법(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MLEC)
- (b) 2005 국제계약에서의 전자적 의사표현 이용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ECC)
- (c) 2017 UNCITRAL 전자적 전송 가능 기록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MLETR)

출처: 전계 자료(각주 3), 3쪽 바탕으로 저자번역.

- MLEC와 달리 ECC의 적용 범위는 국제 계약(즉, 사업장이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러한 제한은 조약으로서 ECC의 성격에 따른 기능에 해당함.¹⁷⁾ ECC가 대상 법률 등에 포함됨에 따라 국제 계약에서도 자동계약에 대한 사항을 적

15) United Nations, UNCITRAL Working Group IV 65세션 자료(A/CN.9/WG.IV/WP.179): “Advancing work on automated contracting”, 4쪽.

16) 전계 자료(각주 15), 4쪽.

17) 전계 자료(각주 3), 26쪽.

용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게 되며 계약 당사자의 범주를 설정하는 부분에서도 국제계약인 경우를 고려하여 실무그룹의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

(2) 자동계약 관련 검토 대상이 되는 법률 등의 주요 규정

- 여기에서는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UNCITRAL 법률 등의 규정 중 자동계약의 적용시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발췌하여 검토하였는데, 주로 전자계약 관련 기존 규정이 해당됨

1) 자동 메시지 시스템(automated messaging systems)

- ECC 제4조(g)에서 자동 메시지 시스템이란 “시스템에 의해 데이터 메시지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조치가 시작되거나 응답이 생성될 때마다 자연인의 검토나 개입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적 또는 기타 자동화된 수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s)

- ECC 제4조(b)에서 전자적 의사표시란 “당사자 간 데이터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이며, 제4조(a)에서 의사표시란 “계약의 성립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작성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해야 하는 청약 및 청약의 승낙을 포함한 모든 진술, 선언, 요구, 통지 또는 요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4조(c)는 데이터 메시지를 “전자 데이터의 교환, 전자 메일, 전보, 텔렉스 또는 텔레카피를 포함하며, 그 밖에 전자, 자기, 광학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생성, 전송,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계약의 형성 또는 이행에 사용되는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인정에 관한 조항

- MLEC 제5조에서는 “정보가 데이터 메시지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11조(1)에서는 “계약 형성에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청약 및 승낙은 데이터 메시지를 통해 표시될 수 있다”고 명시함. 또한, 제12조(1)에서는 “데이터 메시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의사 표시 또는 기타 진술이 데이터 메시지의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서 MLEC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계약의 체결이나 전자적 수단의 사용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전통적인 계약 체결 방식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효력의 차이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차별의 금지와 관련해서는 ECC 제12조에서도 규정되고 있는데 “자동 메시지 시스템과 자연인의 상호 작용을 통해 체결된 계약 또는 자동 메시지 시스템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된 계약은 자연인이 자동 메시지 시스템이나 그 계약의 결과에 의해 수행된 각 개별 행위를 검토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함
-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자동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ECC 제12조 규정의 내용에서도 자동화된 시스템이나 컴퓨터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¹⁸⁾ 이와 관련한 실무그룹에서의 자동계약의 법적 인정의 논의에 있어서도 여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은 독립적인 의사나 법인격이 없는 단순한 도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동의를 받고 있음¹⁹⁾

4) 서명

- MLEC 제7조(1)에서는 법률에서 자연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이지만 데이터 메시지를 사용한 계약을 하는 때에는 해당 사용자를 식별하고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해당 사용자의 승인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도록 하고 있음. 즉, 관련 계약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비추어 데이터 메시지가 생성되거나 전달된 목적에 적합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자연인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한 것임
- 또한, ECC 제9조(3)에서는 법률에서 의사표시 또는 계약에 당사자의 서명을 요구하거나 서명이 없을 때의 불이익을 규정한 경우 (a) 당사자를 식별할 수 있고, 전자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b) 이 방법이 ① 관련 계약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비추어 전자 의사표시가 생성되거나 전달된

18) 전계 자료(각주 3), 7쪽.

19) 전계 자료(각주 3), 7쪽.

목적에 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거나, ⑩ 단독으로 또는 추가 증거와 함께 보았을 때 (a)항에 설명된 기능을 수행한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경우에 전자 의사표시 관련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5) 원본의 보관(정보의 무결성)

- MLEC 제8조(1)에서 법률에 따라 정보를 원래 형태로 제공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경우, (a) 정보가 데이터 메시지 또는 기타 최종 형태로 처음 생성된 시점부터 정보의 무결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이 존재하여야 하며, (b)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시 대상자에게 표시할 수 있으면 데이터 메시지로 정보의 원본 제공 및 보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함
- 한편, ECC 제9조(4)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률에서 의사표시 또는 계약서를 원본 형태로 제공 또는 보관하도록 요구하거나 원본이 없는 경우의 별도 규정을 둔 경우에는 (a) 전자 의사표시 또는 기타 방식의 최종 형태로 처음 생성된 시점부터 포함된 정보의 무결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이 존재하고, (b)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표시할 수 있다면 전자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원본 제공 및 보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결과적으로 원본 제공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정보가 추가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하고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²⁰⁾

6) 데이터 메시지 발송 및 수신 시간

- MLEC 제15조에 따르면,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데이터 메시지의 발송은 발신자 또는 발신자를 대신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정보 시스템에 도착할 때를 기준으로 함
- 즉,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 시간은 (a) 수신인이 데이터 메시지 수신을 목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①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시점 또는 ② 데이터 메시지가 지정된 정보 시스템이 아닌 수신인의 정보 시스템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수취인이 데이터 메시지를 검색하는 시점으로

20) 전계 자료(각주 3), 9쪽.

한다. (b) 수신인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수신인의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면 수신인인 것으로 봄²¹⁾

- ECC 제10조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송 시점은 (a)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자 또는 발신자를 대신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를 전송한 당사자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 시스템을 떠난 시점 또는 (b) 전자적 의사표시 발신자 또는 발신자를 대신하여 전자적 의사표시를 전송한 당사자의 통제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않은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를 수신한 시점이 됨
- 한편, 전자 의사표시의 수신 시점은 수신인이 지정한 전자 주소에서 수신인이 전자 의사 표시를 검색할 수 있게 된 시점이 됨. 수신인의 다른 전자 주소에서 전자 의사표시를 수신한 시점은 해당 주소의 수신인이 전자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게 되고 수신인이 해당 주소로 전자 의사표시가 전송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말함. 즉, 전자 의사표시는 수신인의 전자 주소에 도달하면 수신인이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²²⁾
- 이와 같이 전송시점에 대한 MLEC와 ECC의 규정은 서로 상이함. ECC 제10조 제1항은 데이터 메시지가 데이터 메시지를 보낸 사람(발신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때 발송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수신시점에 대한 MLEC와 ECC의 규정은 대체로 유사함²³⁾
- ECC 제10조는 발신자와 수신인이 동일한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계약)을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여기서 ‘정보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ECC 제4조 (f)에 “데이터 메시지를 생성, 전송, 수신, 저장 또는 기타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정보의 전송, 수신 및 저장에 사용되는 모든 기술적 수단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MLETR에 대한 설명 노트에 따르면 이 용어는 분산 원장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²⁴⁾

7) 데이터 메시지의 귀속

- MLEC 제13조에 따르면, 데이터 메시지는 발신자가 직접 보낸 경우 발신자의 메시지이며,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a) 해당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발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21) 전계 자료(각주 3), 11쪽.

22) 전계 자료(각주 3), 11쪽.

23) 전계 자료(각주 3), 11쪽.

24) 전계 자료(각주 3), 12쪽.

사람이나 (b) 원저작자 또는 원저작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정보시스템에 의해 데이터 메시지가 전송된 경우 해당 데이터 메시지는 발신자의 메시지로 간주된다고 함²⁵⁾

- 또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수신자는 (a) 데이터 메시지가 발신자의 메시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가 해당 목적을 위해 발신자가 이전에 동의한 절차를 적절히 적용했거나, (b) 수신자가 수신한 데이터 메시지가 발신자 또는 발신자의 대리인과의 관계 등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자의 것으로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자의 메시지로 간주하고 그 간주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함²⁶⁾
- 이와 같이 MLEC 제13조는 주로 데이터 메시지의 발신자의 본인 여부에 관한 사항임. 즉, 발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실제로 데이터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며,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설정된 인증 절차에 따라 발신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에 따른 위험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8) 입력오류

- ECC 제14조는 자연인인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자동 메시지 시스템과 주고받은 전자 의사표시에서 오류로 입력을 하였을 때, 자동 메시지 시스템이 그 당사자에게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를 대리한 당사자는 입력 오류가 발생한 전자 의사표시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함
- 즉, (a)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를 대리한 당사자가 오류를 알게 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상대방에게 오류를 통지하고 전자 의사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b) 해당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를 대리한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이익이나 가치를 사용하거나 받지 않은 경우²⁷⁾에 입력 오류가 발생한 전자 의사표시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임

25) 전계 자료(각주 3), 13쪽.

26) 전계 자료(각주 3), 13쪽.

27) 전계 자료(각주 3), 14쪽.

III UNCITRAL의 “자동 계약에 관한 원칙 수정안”의 내용

- 앞서 UNCITRAL 사무국에서 자동 계약 원칙에 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설명함. 실무그룹 제64차 세션에서 UNCITRAL 기존 규칙들 중 관련 조문을 추출하여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초안을 마련하여 사무국에 이 초안을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무국에서 이후에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시한 것임
- 이하의 내용은 실무그룹 제66차 세션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²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수정안이 제시되는 과정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수정안은 현재 총 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실무그룹과 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변경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1. 계약시의 자동화된 시스템의 사용

<p>Principle 1 Use of automated systems in contracting</p> <p>(a) Automated systems used in contracting are deterministic or non-deterministic systems capable of carrying out actions, without the necessary review or intervention of a natural person, for the purpose of forming or performing contracts. Automated systems are used throughout the contract life cycle, including in the formation and performance of contracts</p>	<p>원칙 1 계약시 자동화된 시스템 사용</p> <p>(a) 계약에 사용되는 자동화된 시스템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목적으로 자연인의 검토나 개입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결정론적 또는 비결정론적 시스템을 말한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계약의 형성 및 이행을 포함하여 계약 주기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p>
---	--

28) 전제 자료(각주 4), 2쪽.

<p>(b) Automated systems can be used to form contracts by processing data messages that constitute communic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f contracts, such as an offer or acceptance of an offer. Automated systems can be used to perform contracts by processing data messages that constitute an action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p>	<p>(b) 자동화된 시스템은 청약 또는 청약의 승낙과 같은 계약 형성에 관한 의사소통에 관한 데이터 메시지를 처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계약 이행에 관한 행위를 구성하는 데이터 메시지를 처리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p>
<p>(c) The terms of a contract that is formed or performed using automated systems can be contained in data messages, including computer code and data messages that are logically associated, whether generated contemporaneously or not</p>	<p>(c)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형성되거나 수행되는 계약 조건은 동시에 생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관된 컴퓨터 코드 및 데이터 메시지를 포함한)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다.</p>

출처: 전계자료(각주4), 3쪽 바탕으로 저자 번역.

(1) 자동화된 시스템의 정의 : 자동화된 시스템과 AI 시스템의 차이

- 실무그룹은 “자동화된 시스템”의 개념과 ECC의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의 정의(시스템에 의해 조치가 시작되거나 응답이 생성될 때마다 자연인의 검토나 개입 없이 데이터 메시지 또는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치를 시작하거나 응답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전자적 또는 기타 자동화된 수단)가 자동계약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음²⁹⁾
- 실무그룹의 논의는 인공지능 계약과 인공지능을 위한 계약을 구분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을 위한 계약은 AI 모델 및 AI 서비스 공급계약으로 구성되며,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AI 계약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³⁰⁾을 전제로 하고 있음

29) 전계 자료(각주 2), 10쪽.

30) 전계 자료(각주 2), 11쪽.

- 실무그룹은 자동화된 시스템과 AI 시스템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AI 시스템이 자동화된 시스템의 하위 개념이 된다는 점에 일반적인 동의가 있었는데, 원칙 1에서 인공 지능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AI 자체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AI의 특징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머신러닝 기술의 사용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특정하는 것이 기술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고려에 따라 원칙 1과 같이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원칙 1의 규정 방식에 대해 실무그룹에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 정의가 AI 시스템이나 계약 환경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 용어가 AI 시스템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에 AI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음.³¹⁾ AI 시스템 유형을 대표 하는 규칙 기반 시스템과 머신러닝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불명확한 용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자동화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그 설계에 자연인이 관여한다는 의견과 자연인의 추가 개입 없이 작동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지칭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그룹에서는 자연인의 통제가능성이 AI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원칙이며, "자연인의 검토나 개입이 없는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AI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통제가능성이라는 법적요건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³²⁾
- 이와 같이 AI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실무 그룹은 AI 거버넌스가 아닌 전자적 형식을 갖춘 계약의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후술하는 기술 중립성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음) 모든 자동화된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원칙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제시된 원칙 1의 내용으로 정리됨

31) United Nations, UNCITRAL Commission Session 56세션 자료(A/CN.9/1132), "Report of Working Group IV (Electronic Commerce) on the work of its sixty-fifth session (New York, 10-14 April 2023)", 2023. 4. 25., 18쪽.

32) 해당 표현은 자동화의 개념을 표현한 것이며 ECC 제4조(g)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2) 계약 주기의 전반에 걸친 적용

- 원칙 1에서 이 원칙은 계약 주기 전반에 적용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원칙 1은 계약 수명 주기에 대하여 형성과 이행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ECC에서 취하는 접근 방식에 따라 형성의 개념은 계약 전 협상과 계약 체결을 포함하며, 이행의 개념은 계약 불이행과 계약에 규정된 구제수단의 행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³³⁾ 이와 같은 설명이 추가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원칙이 계약 위반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이에 대해 계약의 형성에 계약 전 협상이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행에는 불이행과 구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논의에 따른 것임. 또한, 계약에서 이미 당사자가 합의한 위반에 대한 구제책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함³⁴⁾

(3) 처리의 개념

- 원칙 1 (b)항에서 "처리"라는 용어는 데이터 메시지(출력)를 생성 또는 전송하고 데이터 메시지(입력)를 수신하는 시스템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함³⁵⁾

(4) 청약과 승낙

- 원칙 1 (b)항에서 "청약 또는 청약의 승낙과 같은 계약 형성에 관한 의사소통에 관한 데이터 메시지를 처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계약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임³⁶⁾

33) 전계 자료(각주 31), 11쪽.

34) 전계 자료(각주 31), 11쪽.

35) 전계자료(각주 4), 3쪽.

36)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계약의 체결 방식의 설명에서도 "한쪽 당사자가 코드를 작성하며, 이더리움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아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도록 한 후,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온체인 스마트 계약서 형태로 특정 계약을 제안하면, 다른 당사자가 교신함으로써 제안된 계약을 승낙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며 추후 일정한 조건을 성취하는 이러한 모습은 계약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청약과 그에 대한 승낙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종길, 전계 논문(각주 5), 249쪽.

2. 법적 인정

Principle 2 Legal recognition	원칙 2 법적 인정
(a) A contract is not to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an automated system was used in its formation	(a) 계약의 체결에 자동화된 시스템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유효성이나 집행 가능성을 부정하면 안 된다.
(b) An action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f a contract is not to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was carried out by an automated system	(b) 계약의 형성과 관련된 조치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나 집행 가능성을 부정하면 안 된다.
(c) An action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 is not to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it was carried out by an automated system	(c) 계약 이행과 관련된 조치가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나 집행 가능성을 부정하면 안 된다.
(d) Information referred to in a data message containing the terms of a contract shall not be denied legal effect,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the data message containing the information is generated by an automated system after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d) 계약 조건이 포함된 데이터 메시지의 정보는 해당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메시지가 계약 성립 후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 전계자료 각주(4), 4쪽 바탕으로 저자 번역

- 원칙 2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실제로 알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원칙 2와 특히 관련성이 높은 것은 ECC에서 의사소통(청약 및 청약의 수락을 포함한 모든 진술, 선언, 요구, 통지 또는 요청)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계약 환경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에 관한 것임³⁷⁾
- 이에 따라 계약의 체결에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한 자동계약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법률관계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37) 전계 자료(각주 4), 4쪽.

(a)항은 이 원칙이 계약과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UNCITRAL의 차별금지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됨

3. 기술 중립성

<p>Principle 3 Technology neutrality</p> <p>Nothing in these principles requires the use of a particular method in automated systems</p>	<p>원칙 3 기술 중립성</p> <p>이 원칙의 어떤 내용도 자동화 시스템에서 특정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p>
---	---

출처: 전계 자료(각주4), 5쪽 바탕으로 저자 번역.

- 원칙 3은 특정한 기술을 자동화 시스템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한편, 다른 법률에서 특정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음³⁸⁾
- 기술중립을 선언한 이 원칙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이나 알고리즘 관련 기술 등 자동계약에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기술을 사용하여 자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 개발되는 여러 기술을 모두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귀속

<p>Principle 4 Attribution</p> <p>(a) A data message generated or sent by an automated system is attributed to the person on whose behalf the automated system is operated</p>	<p>원칙 4 귀속</p> <p>(a)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거나 전송된 메시지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운영을 대신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p>
---	--

38) 전계 자료(각주 4), 5쪽.

<p>(b) Notwithstanding paragraph (a), as between the parties to a contract, a data message generated or sent by an automated system is attributed in accordance with any procedure agreed to by the parties for that purpose</p>	<p>(b) (a)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간에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거나 전송된 메시지는 해당 목적을 위해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귀속된다.</p>
<p>(c) If an automated system is operated on behalf of multiple parties, a data message generated or sent by the automated system is at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al rules of the system</p>	<p>(c) 자동화 시스템이 여러 당사자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에서 생성되거나 전송된 메시지의 귀속은 해당 시스템의 운영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p>
<p>(d) This principle does not deal with the legal consequences that may flow from a data message that is attributed to a person under this principle</p>	<p>(d) 이 원칙은 이 원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귀속되는 데이터 메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는 다루지 않는다.</p>

출처: 전계 자료(각주4), 6쪽 바탕으로 저자 번역.

- 법적 효력의 귀속은 계약에서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됨. "귀속"의 개념은 자동화된 시스템의 결과를 자연인과 연결하여 그 결과가 해당 자연인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임.³⁹⁾ 자동화된 시스템의 결과물은 항상 시스템 자체가 아닌 자연인에게 귀속된다는 실무그룹의 입장을 반영한 원칙이라 할 수 있음
- 원칙 4는 자동화 시스템이 독립적인 의지나 법인격이 없는 도구이며, 따라서 자동화 시스템의 결과물은 시스템 자체가 아닌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기존 UNCITRAL 규정과 “2021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유네스코 권고)”에 반영된 접근 방식을 반영⁴⁰⁾한 것임
- 유네스코 권고에서는 회원국은 특히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때 궁극적인 책임과 의무는 항상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있어야 하며 AI 시스템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AI

39) 전계 자료(각주 4), 6쪽.

40) 유네스코, 총회 기록, 제41차 총회, 제1권(파리, 2022), 부록 VII, para. 68.

시스템의 여러 단계에 걸쳐 AI 행위자 및 관련 기술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수립하도록 함⁴¹⁾

- 또한, ECC 제12조는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이나 컴퓨터가 직접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하였으며,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메시지 시스템이나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전자적 의사표시는 해당 메시지 시스템이나 컴퓨터가 운영되는 법인으로부터 발신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함⁴²⁾
- 자동화된 시스템의 결과물을 자연인 또는 법인에 연결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계약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지적재산의 경우에 AI 시스템이 생성한 결과물을 자연인 또는 법인에 연결하여 판단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⁴³⁾
- 한편, 당사자가 직접 시스템을 운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상황에서는 시스템의 결과물이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는 당사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임⁴⁴⁾
- 이와 달리 당사자가 서비스 제공업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보게 됨⁴⁵⁾
- (b)항은 양 당사자가 각각 다른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특정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 원칙에서 (b)항과 (c)항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b)항은 제3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 경우 해당 시스템의 운영 규칙은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를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⁴⁶⁾

41) 전계 자료(각주 4), 6쪽.

42) 전계 자료(각주 4), 6쪽.

43) 전계 자료(각주 4), 7쪽.

44) 전계 자료(각주 4), 7쪽.

45) 전계 자료(각주 4), 7쪽.

46) 전계 자료(각주 4), 7쪽.

5. 당사자의 의사, 지식 및 인식

<p>Principle 5 Intention, knowledge and awareness of the parties</p> <p>Where the law requires the presence of intention, knowledge or awareness of a person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r performance of a contract,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the use of an automated system (whether deterministic or non-deterministic) having regard to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as appropriate,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law</p>	<p>원칙 5 당사자의 의사, 지식 및 인식</p> <p>법률에서 계약의 형성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의사, 지식 및 인식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적절히 고려하였을 때 자동화된 시스템(결정론적 또는 비결정론적)의 사용에 있어서도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p>
---	--

출처: 전계 자료(각주 4), 7쪽 바탕으로 저자 번역.

- 원칙 5는 새롭게 제시된 원칙으로 원칙 4의 귀속에 대한 원칙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원칙 4가 그 행위의 주체를 식별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면 원칙 5는 그 주체가 무슨 의도였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 원칙 5에서는 자동화된 계약에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한 계약에서 법률에서 계약의 형성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의 의사, 지식 및 인식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을 둔 것임⁴⁷⁾
- 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의 여러 조항에서 당사자의 의사, 지식 또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의 검토나 개입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동화된 계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어떻게 충족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 5의 규정을 둔 것임⁴⁸⁾
-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 행위와 관련된 사람의 의사는 본질적으로 시스템의 설계(즉, 프로그래밍 방식)와 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포함한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보는

47) 전계 자료(각주 4), 8쪽.

48) 전계 자료(각주 4), 8쪽.

계약에서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 되며, 이 정보의 가용성은 원칙 6에서 다루고 있음⁴⁹⁾

6. 잘못된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효력

<p>Principle 6 Legal consequences of erroneous data messages</p> <p>(a) A party to a contract cannot rely on a data message that is attributed to another party to the contract i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the data message was generated or sent by the automated system in a manner that the other party did not anticipate or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anticipated, having regard to the operational rules of the system and operations logs; and ② the relying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that the data message was generated or sent in such a manner, having regard to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other party <p>(b) Nothing in this principle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or agreement of the parties that may govern the legal consequences of a data message other than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a)</p>	<p>원칙 6 잘못된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효력</p> <p>(a) 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 데이터 메시지에 의거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했거나 시스템의 운영 규칙 및 운영 로그를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방식에 따라 자동화된 시스템이 데이터 메시지를 생성 또는 전송하였으며, ② 의거 당사자가 상대방이 공개한 정보를 고려하였을 때 데이터 메시지가 그러한 방식으로 생성 또는 전송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p>(b) (a)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 원칙의 어떠한 내용도 데이터 메시지의 법적 효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	--

49) 전계 자료(각주 4), 8쪽.

<p>(c) Nothing in this principle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that may require a person to disclose information on the design or operation of an automated system, or provides legal consequences for disclosing inaccurate, incomplete or false information, or for failing to do so</p>	<p>(c) 이 원칙의 어떠한 내용도 자동화된 시스템의 설계 또는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불완전한 정보, 허위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규의 적용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	---

출처: 전계 자료(각주 4), 8-9쪽 바탕으로 저자 번역.

- 원칙 6은 프로그래밍 오류와 관련된 상황, 제3자의 간섭으로 인한 상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출력을 생성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음⁵⁰⁾
- 실무그룹에서는 이 원칙을 규정함에 있어 “오류”라는 단어로 규정하려고 하였으나 오류는 실수와 혼동될 수 있다⁵¹⁾는 점과 오류로 인한 상황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의도하지 않은 출력을 생성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⁵²⁾ 우려에 따라 현재와 같이 “잘못된 데이터 메시지”로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임
- 원칙 6의 초안은 당사자 간에 전송된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신뢰 위험을 배분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MLEC 제13조 제5항을 바탕으로 함. 제13조 제5항은 당사자가 수신된 데이터 메시지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는 데이터 메시지가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가정하에 행동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것임⁵³⁾
- 따라서 원칙 6의 효과는 당사자가 계약 관계의 한도 내에서 잘못된 데이터 메시지에 구속 되지 않음
- 원칙 6(a)ii항에서 “상대방이 공개한 정보와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해당 정보가

50) 전계 자료(각주 4), 9쪽.

51) 사무국은 이전에 데이터 처리 오류를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원칙 6에 나열된 상황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잘못된 입력, ECC 제14조에 규정된 입력 오류의 유형이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전계 자료(각주 4), 9쪽.

52) 전계 자료(각주 4), 9쪽.

53) 전계 자료(각주 4), 9쪽.

신뢰 당사자가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사항을 입증하는 데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와 같이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것은 자동화된 시스템의 운영에서 핵심이 되는 투명성에 관한 사항이 됨⁵⁴⁾

- 원칙 6(b)항은 원칙6(a)항이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근거한 시스템 운영 규칙(예를 들면, 고빈도 거래 플랫폼 거래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오류의 영향을 받는 자동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다른 방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의 자율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한 것임⁵⁵⁾

7. 관련 법률의 준수

<p>Principle 7 •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p> <p>The person on whose behalf the automated system is operated ensures, within any limitations on the use of the system disclosed to the person by the system operator, that the design, operation and use of the automated system in contracting complies with all applicable laws</p>	<p>원칙 7 • 관련 법률의 준수</p> <p>자동화된 시스템이 운영을 대신하는 사람은 시스템 운영자가 그 사람에게 공개한 시스템 사용 제한 사항 내에서 계약 시의 자동화된 시스템의 설계, 운영 및 사용이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p>
---	---

출처: 전계 자료(각주 4), 11쪽 바탕으로 저자 번역.

- 원칙 7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운영을 대신하는 사람”이 계약 시 자동화된 시스템의 설계, 운영 및 사용이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모든 관련 법률”이라는 문구는 이 원칙이 자동화된 시스템에 적용되는 법률(예 : AI 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표준 규정 등)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시스템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예: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도 관련 되는 것임을 나타냄.⁵⁶⁾ 또한, 국경 간 거래 등의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포함하고자 하는

54) 전계 자료(각주 4), 10쪽.

55) 전계 자료(각주 4), 10쪽.

56) 전계 자료(각주 4), 11쪽.

의도⁵⁷⁾ 역시 반영된 표현에 해당함

- “시스템 운영자가 공개한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 내에서”라는 문구는 시스템 운영자가 자동화된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반영된 것이며, 신원 관리 및 신탁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이와 유사한 공개의무가 부과됨⁵⁸⁾
- 실무그룹은 모든 관련 법률에 자동화된 계약 조건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이 원칙에 따라 자동화된 시스템이 해당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이 사용하는 기술이 복잡한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원칙의 적용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⁵⁹⁾

57) 전계 자료(각주 4), 27쪽.

58) 전계 자료(각주 4), 12쪽.

59) 전계 자료(각주 4), 12쪽.

IV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 향후 전망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는 실무그룹에 자동 계약에 적용되는 UNCITRAL 법규의 조문을 정리하고 해당 조항을 적절히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⁶⁰⁾ 이에 따라 실무그룹에서 논의를 거쳐 제시된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 초안은 현재 사무국의 수정안이 제시된 상태임
- 향후 실무그룹은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에 관한 작업과 “데이터 계약”에 대한 작업을 병행하여⁶¹⁾ 2025년 하반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실무그룹 제70차 회의에서 마무리하고 2026년 제59차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을 위해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함⁶²⁾
-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은 MLEC 채택 이후 30년 동안의 무역 관행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임.⁶³⁾ 실무그룹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MLEC와 같은 초기 UNCITRAL 규칙의 조항은 전자 데이터 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및 유사 기술의 사용을 전제로 한 반면, ECC와 같은 후속 법률 등은 인터넷의 보편적인 사용을 고려한 것⁶⁴⁾이라는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있음
- 이후의 MLETR 및 “UNCITRAL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정안(The UNCITRAL Model Law on the Use and Cross-border Recognition of Identity Management and Trust Services, MLIT)”⁶⁵⁾와 같은 최근의 UNCITRAL 법률 등은 디지털 원장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것으로 각각 MLEC의 전자 무역 문서에 관한

60) 전계 자료(각주 3), 2쪽.

61) 실무그룹에서는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과 구분하여 데이터 계약에 관한 의제를 채택하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62) 전계 자료(각주 4), 14쪽.

63) 전계 자료(각주 4), 13쪽.

64) A/CN.9/1125, 제9항.

65) 관련 내용 상세는 UNCITRAL 자료 참조 (<https://uncitral.un.org/en/mlit>, 2023. 10. 31. 최종방문).

조항과 “전자 서명에 관한 모델법(The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MLES)”⁶⁶⁾의 전자 서명 제도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이와 같은 전자거래 문서에 대한 UNCITRAL 법률 등의 업데이트는 각 국가 차원에서 반영되고 있음⁶⁷⁾

-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면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이 채택될 경우 각 국가 차원의 후속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공지능 등 기술의 보편적 사용에 따라 UNCITRAL이 국제적인 상거래분야 자동계약에 관한 각 국가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역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는 방식에 있어 현재 실무그룹이 UNCITRAL 규칙을 자동계약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 이외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는 계약을 포함하는 자동계약에만 적용되는 UNCITRAL의 규칙을 별도로 만드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실무그룹의 자료에서도 역시 전자 거래에 관한 UNCITRAL의 규칙 중 자동계약에 관한 조항을 MLEC와 ECC에서 분리하여 단일 입법 규칙안을 만드는 것이 현재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을 만드는 방식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⁶⁸⁾

2. (1)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의 의의와 한계

시사점

- 이미 전자거래에 관한 UNCITRAL의 규칙은 전 세계 약 100개 국가에서 이러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거나 영향을 받은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UNCITRAL 규칙의 채택과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음⁶⁹⁾

66) 관련 내용 상세는 UNCITRAL 자료 참조 (https://uncitral.un.org/en/texts/ecommerce/modellaw/electronic_signatures, 2023. 10. 31. 최종방문).

67) 전계 자료(각주 4), 12쪽.

68) 전계 자료(각주 4), 12쪽.

69) 전계 자료(각주 4), 13쪽.

- 실무그룹에서의 이번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는 작업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법의 현대화 및 자동계약에 관한 각국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동계약에 대한 논의는 결국 “인간의 개입이 배제된 계약에서 거래당사자는 서로 어떻게 의사의 합치를 이루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서로 구속되어야 하는가”⁷⁰⁾라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일 것으로 보임
- 디지털 시대에서 이전보다 신속하고 단순화된 계약 방식은 교섭 과정에서 인적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줄이고 합의 과정에도 변화를 가져왔음.⁷¹⁾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한 계약 등의 방식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스마트계약이나 알고리즘 계약 등에 관한 적용까지 이어지고 있음
- 인공지능이나 분산원장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계약 등 계약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의 정교함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원격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결국 계약의 협상, 체결 및 이행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⁷²⁾ 이와 함께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교섭력의 확보 측면이나 의사표시의 귀속 가능성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자동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국제규범을 마련해 나간다는 것은 제도의 발전과 함께 법률을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의 내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계약 방식을 사용하는 자동계약 분야에 있어서 국가 간의 기술 발전의 차이가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공통된 국제규범을

70) 김중길, “스마트 계약의 구속력 근거로서 계약이론 고찰 - 영미법계 이론 논의를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2. 4. 30., 115쪽.

71) Karl-Heinz Neumayer, Contracting Subject to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Contracts in General, vol. VII/2 (2008) 8; 김중길, 전제 논문(각주 5), 237쪽 재인용.

72) 전제 자료(각주 3), 3쪽.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면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보완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러한 긍정적인 의의가 있는 반면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한 각 국가의 계약 관련 법률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국내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인공지능 등 자동적인 시스템으로 체결되는 계약 관련 법체계가 갖추어진 국가에서는 적용의 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현재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계약은 기존의 「민법」 등 전통적인 계약관련 법률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아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음. 즉, 이미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계약이 활성화 된 국가의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계약 일반에 적용되는 법률 외에 개별 기술과 관련된 법률이나 개별적인 업역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이에 관한 규범체계를 마련해 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보다 세밀한 규율이 가능한 기존의 법체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2)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

- 기존에 위원회를 통해 제시되는 UNCITRAL 법률 등은 주로 상업적인 거래 환경의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당사자의 자율성 및 계약의 자유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음. 따라서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UNCITRAL 규칙들을 검토할 때 일반 계약법 원칙이 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임. 다만, 기존의 일반 계약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었던 자동계약의 자체적인 계약 체결 관련 분쟁의 해결이나 데이터 오류 관련 책임 귀속의 문제 등 자동계약의 쟁점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제시된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은 자동계약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는데 집중하여 자동화된 시스템 운영자 또는 자동계약서 작성자(계약서 작성에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자)에 대한 검토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있음. 자동계약의 다양한 유형과 이를 사용하는 다양한 참여자를 모두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기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자동계약의 주요 참여자의 법적인 책임 귀속과 관련하여 자동계약에

적용되는 별도의 운영자 또는 작성자의 개념 정의나 책임에 관한 사항이 검토될 필요도 있을 것임

- 그 밖에 자동계약은 계약에 참여하는 다수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므로 시스템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자동계약은 참여 당사자나 중개인의 개입 없다는 점에서 거래비용의 감소와 투명성을 갖춘 계약이라는 장점과 함께 이미 계약 참여 당사자에 대한 신뢰가 기술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면 상대 계약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뢰 확보나 확인을 위한 당사자의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을 갖추게 됨

(3)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고려 사항

- 계약에 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적용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기업의 여러 가지 영업 활동에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 고빈도 계약이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금융업이나 보험업,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기업 활동의 확장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적재산권이나 증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되고 있으므로 자동계약의 확장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의 확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국제 무역을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새로운 무역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면 위원회와 실무그룹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계약 등 자동계약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기업의 영업활동을 고려하되, 기존 각 국가별 법률 프레임워크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종길, “스마트 계약의 구속력 근거로서 계약이론 고찰 - 영미법계 이론 논의를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2. 4. 30
- _____, “스마트 계약 성립의 계약법적 정합성에 관한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1. 4. 30
- United Nations, UNCITRAL Working Group IV 63세션 요약보고서(A/CN.9/1093), “Summary of the Chairperson and the Rapporteur of the work of Working Group IV (Electronic Commerce) at its sixty-third session”, 2022. 5. 9
- _____, UNCITRAL Working Group IV 64세션 자료(A/CN.9/WG.IV/WP.176), “Provisions of UNCITRAL texts applicable to automated contracting Note by the Secretariat”, 2022. 9. 12
- _____, UNCITRAL Working Group IV 65세션 자료(A/CN.9/WG.IV/WP.179), “Advancing work on automated contracting”, 2023. 2. 1
- _____, UNCITRAL Working Group IV 66세션 자료(A/CN.9/WG.IV/WP.182), “Draft provisions on automated contracting”, 2023. 8. 14
- _____, UNCITRAL Commission Session 56세션 자료(A/CN.9/1132), “Report of Working Group IV (Electronic Commerce) on the work of its sixty-fifth session (New York, 10-14 April 2023)”, 2023. 4. 25

KLRI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2023년 제8호
Global Legal Issue

UNCITRAL의 “자동계약에 관한 원칙 초안”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